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장상기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이광호,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전석기, 정진철,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26명)

1. 제안이유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개별 운영 중인 정비사업관리시스템(클린업, e조합, 분담금 프로그램)을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으로 통합 구축·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사업시스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등의 용어를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히 함(안 제 6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의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이하 “클린업시스템”이라 한다)”를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9항과 제24조제1항의 “클린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시스템”이라 한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제2항의 “정비사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며

제4항의 “클린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제5항의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공개”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정보 공개 등의 작성된 자료를 등록”으로 하며

제6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사업시스템”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공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조합업무지원 : 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 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제70조제1항과 제85조 본문의 “클린업시스템”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p> <p>⑥ 구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u>클린업시스템(이하 "클린업시스템"이라 한다)</u>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u>클린업시스템</u> 및 구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입금한다.</p> <p>제24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u>클린업시스템</u>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p> <p>⑥ ----- ----- -----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u>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u>----- ----- ----- -----</p> <p>⑨ ----- ----- -----<u>종합정보관리시스템</u>----- ----- ----- -----</p> <p>제24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① ----- ----- ----- ----- ----- ----- -----<u>종합정보관리시스템</u>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제6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1. 클린업시스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2.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3.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 예산·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1. 정보공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조합업무지원 : 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②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④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회계 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 사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정보공개방법 및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90일 이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5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공공지원자 및 위탁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클린업시스템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⑤ -----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정보
공개 등의 작성된 자료를 등록-----

⑥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
리시스템-----

제70조(정보공개방법 및 시기 등)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제85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